

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MSDS 번호: AA01473-0000000030

휘발유(MG-3)

Date of issue: 2016-04-12 Revision date: 2024-02-29 Version: 8.0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 제품명

- 휘발유(MG-3)

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용도 : 연료 및 연료 첨가제

- 사용상의 제한 : 현행법규 및 규정을 준수할 것

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○ 제조자 정보

- 회사명 :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

- 주소 : 충청남도 서산시 평신2로 182 HD현대오일뱅크

- 전화번호: 0416605675- 긴급 전화번호: 0416605675

○ 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회사명 :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

- 주소 : 충청남도 서산시 평신2로 182 HD현대오일뱅크

- 전화번호: 0416605675- 긴급 전화번호: 0416605675

2. 유해성·위험성

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
- 인화성 액체 : 구분1

- 급성 독성(흡입: 증기) : 구분4 -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: 구분2 -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: 구분2 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구분1B

- 발암성 : 구분1A - 생식독성 : 구분2

- 특정표적장기 독성(반복 노출) : 구분2

- 흡인 유해성 : 구분1

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○ 그림문자







○ 신호어

- 위험

○ 유해·위험 문구

- H224 극인화성 액체 및 증기
-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
-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-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- H332 흡입하면 유해함
- H340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
- H350 암을 일으킬 수 있음
- H361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
- H373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

○ 예방조치문구

1) 예방

-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.
-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
- P210 열, 고온의 표면, 스파크,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. 금연
-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.
-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.
- P241 방폭형 (전기·화기·조명)설비를 사용하시오.
-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.
-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.
- P260 가스/미스트/증기/스프레이를(을) 흡입하지 마시오.
- P261 가스/미스트/증기/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.
- P264 취급 후에는 취급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.
-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.
- P280 보호장갑·보호의·보안경·안면보호구를(을) 착용하시오.

2) 대응

- P301+P310 삼켰다면: 즉시 의료기관/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02+P352 피부에 묻으면: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.
- P303+P361+P353 피부(또는 머리카락)에 묻으면: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.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/샤워하시오
- P304+P340 흡입하면: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.
- P305+P351+P338 눈에 묻으면: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. 계속 씻으시오.
- P308+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: 의학적인 조치/조언을 받으시오.
-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/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/조언을 받으시오.
- P321 응급처치(눈에 들어갔을 때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세척,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세척,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로 이동, 먹었을 때 구토를 유발할지에 대하여 의료진의 조언을 구함)를 하시오.
-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.
- P332+P313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: 의학적인 조치/조언을 받으시오.
- P337+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: 의학적인 조치/조언을 받으시오.
- P362+P364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.
- P370+P378 화재 시: 불을 끄기 위해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하시오.

3) 저장

- P403+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. 저온으로 유지하시오.
-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.

4) 폐기

-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/용기를 폐기하시오.

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

- 자료없음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	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	함유량(%)
가솔린(GASOLINE)	해당없음	86290-81-5 / KE-17566	87~93
t-Butyl methyl ether	2-Methoxy-2-methylpropane, Methyl tert-butyl ether(MTBE)	1634-04-4 / KE-23648	7~13
* 다음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			
Xylene	Xylol ; Methyltoluene	1330-20-7 / KE-35427	<15
Toluene	Methylbenzene ; Methylbenzol ; Phenyl methane ; Methacide ; Toluol ; 1-Methylbenzene	108-88-3 / KE-33936	<10
Benzene	Benzol; Benzole; Bicarburet of hydrogen; Coal naphtha; Clohexatriene; Phene; Phenyl hydride; Polystream; Pyrobenzol; Pyrobenzole; Cyclohexatriene; Benzine; 1,3,5-Cyclohexatriene;	71-43-2 / KE-02150	<1

4. 응급조치 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

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.
-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증상(발적, 자극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.
-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우선 렌즈를 제거하시오.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-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.
- 오염된 피복은 재사용 전에 (충분히) 세탁하시오
- 오염된 피복과 신발을 제거하고 격리시키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증상(발적, 자극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.
-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.
- 환자를 씻길 경우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피복의 접촉을 피하시오.

다. 흡입했을 때

-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.
-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멈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시오.

라. 먹었을 때

-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.
-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.
- 만약 삼켰다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도록하고 구토를 유도하지 마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
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-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- 노출 및 노출 우려시 의학적인 조치, 조언을 구하시오.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

- 분말소화제, 탄산가스, 일반 포말소화제, 분무
- 직사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.
- 화재 진압 시 방화복, 소방용 구조헬멧, 소방용 안전화, 소방용 안전장갑,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,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극인화성 액체 및 증기
-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-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
- 암을 일으킬 수 있음
-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

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시오.
- 대규모 화재인 경우 무인방수장치를 활용하며, 여의치 않을 경우 물러나서 타도록 내버려 두시오.
-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.
- 소방서에 알리고, 화재 위치와 유해한 특징을 알려주시오.
-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키시오.

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

-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마시오. 작업자가 위험 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키시오.
- 누출지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용기를 이동하시오.
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
- 밀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전에 환기를 실시하시오.
-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대피시키시오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·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하시오.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.

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
-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.
-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.
- 다량누출: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.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.
- 소량 누출: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.
- 용매를 닦아내시오.

7. 취급 및 저장 방법

가. 안전취급요령

-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.
- 모든 안전 주의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
- 사용 전에 사용설명서를 입수하시오.
-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(증기, 액체, 고체)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, 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.
-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.

나. 안전한 저장 방법

- 누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오.
-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밀폐하여 놓으시오.
-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시오.
- 손상된 용기는 사용하지 마시오.
-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.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○ 국내노출기준

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

- [t-Butyl methyl ether]: TWA: 50 ppm

- [Xylene]: TWA: 100 ppm, STEL: 150 ppm- [Toluene]: TWA: 50 ppm, STEL: 150 ppm- [Benzene]: TWA: 0.5 ppm, STEL: 2.5 ppm

○ ACGIH노출기준

- [가솔린(GASOLINE)]: TWA, 300 ppm (890 mg/m3) STEL, 500 ppm (1480 mg/m3)

- [t-Butyl methyl ether]: TWA, 50 ppm (180 mg/m3)

- [Xylene]: TWA 20 ppm

- [Toluene]: TWA 20 ppm (75 mg/m3)

- [Benzene]: TWA, 0.5 ppm (1.6 mg/m3) STEL, 2.5 ppm (8 mg/m3)

○ 생물학적 노출기준

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: 소변 중 Methylhippuric acids: 1.5 g/g 크레아티닌(작업후)

- [Toluene] : 혈액 중 Toluene : 0.02 mg/L(주중 최종작업전), 소변 중 Toluene : 0.03 mg/L(작업후), 소변 중(with hydrolysis) o-Cresol : 0.3 mg/g 크레아티닌(작업후)

- [Benzene] : 소변 중 S-Phenylmercapturic acid : 25 //g/g 크레아티닌(작업후), 소변 중 t,t-Muconic acid : 500 //g/g 크레아티닌(작업후)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가스, 증기, 미스트, 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 기를 권장함

다. 개인 보호구

○ 호흡기 보호

-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(유기 화합물용 정화통 및 전면형)
-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: 송기마스크(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), 공기호흡기(전면형)
- 방독마스크(직결식 소형, 유기 화합물용)
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.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.
-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.

○ 눈 보호

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시오.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보안경을 착용할 것.

○ 손 보호
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 장갑을 착용할 것.

○ 신체 보호
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.

9. 물리화학적 특성

가. 외관	
- 성상	투명한 액체
- 색	약간 노란색
나. 냄새	특유의 냄새
다. 냄새역치	자료없음
라. pH	중성(6~8)
마. 녹는점/어는점	-90.5℃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	30℃ ~ 210℃

-30℃
자료없음
자료없음
7.6%/1.2%
6.5~13.5psi (37.8℃)
불용성
3.0~4.0 (air=1)
0.7~0.8 (water=1)
2.1~6
208~456℃
자료없음
0.5CST(25°c)
자료없음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- 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
 -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.
- 나. 피해야 할 조건
 - 혼합금지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시오.
 - 열, 불꽃, 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.
- 다. 피해야 할 물질
 - 자료없음
- 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 - 자료없음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- 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 - (호흡기)
 -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
 - (경구)
 - 자료없음
 - (눈·피부)
 -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 -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- 나. 건강 유해성 정보
 - 급성 독성
 - * 경구 독성
 - 제품 (ATEmix): >5000mg/kg 분류되지 않음 (구분 외)
 - [가솔린(GASOLINE)]: LD50 14000 mg/kg Rat
 - [t-Butyl methyl ether]: LD50 > 2000 mg/kg Rat (OECD TG 401, GLP) (ECHA)
 - [Xylene]: LD50 3523 mg/kg Rat (EU Method B.1) (ECHA)
 - [Toluene]: LD50 5580 mg/kg Rat (EU Method B.1) (ECHA)
 - [Benzene]: LD50 > 2000 mg/kg Rat (OECD TG 401) (ECHA)
 - * 경피 독성
 - 제품 (ATEmix): 2000mg/kg < ATEmix <= 5000mg/kg 분류되지 않음 (구분 외)
 - [가솔린(GASOLINE)]: LD50 > 3750 mg/kg Rabbit
 - [t-Butyl methyl ether]: LD50 > 2000 mg/kg Rat (OECD TG 402, GLP) (ECHA)

- [Xylene]: LD50 12126 mg/kg Rabbit (ECHA)
- [Toluene]: LD50 > 5000 mg/kg Rabbit (ECHA)
- [Benzene]: LD50 > 8260 mg/kg (9.4 mL/kg) Guinea pig and rabbit (OECD TG 402) (ECHA)

* 흡입 독성

- 제품 (ATEmix): Vapor 2.0mg/L 4hr < ATEmix <= 10.0mg/L 4hr
- [가솔린(GASOLINE)]: vapor LC50 > 5.2 mg/l 4 hr Rat
- [t-Butyl methyl ether]: LC50 85.0 mg/L/4 hr Rat(ECHA)
- [Xylene]: Vapor LC50 10~20 mg/L 4 hr (NIER)
- [Toluene]: Vapor LC50 28.1 mg/L 4 hr Rat (OECD TG 403) (ECHA)
- [Benzene]: Vapor LC50 43.7 mg/L 4 hr Rat (OECD TG 403) (ECHA)

○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

- [가솔린(GASOLINE)]: 드래이즈 테스트 결과 토끼의 피부에 약한 자극을 일으킴.
- [t-Butyl methyl ether] : 토끼를 이용한 피부부식성/자극성 시험결과 중간정도의 자극과 함께 가역적인 홍반, 부종이 발생함(OECD Guideline 404)(ECHA)
- [Xylene]: 보통자극성[Standard Draize test]: rabbit 피부자극성 물질임 (NIER)
- [Toluene] :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 부식성/자극성 시험 결과 자극성인 (EU Method B.4. GLP) (ECHA)
- [Benzene]: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 부식성/자극성 시험 결과 자극성 있음 (OECD TG 404) (ECHA)

○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

- [가솔린(GASOLINE)]: 드래이즈 테스트 결과 토끼의 눈에 자극을 일으키지 않음.
- [t-Butyl methyl ether] : 토끼에서 약한 자극성이므로 구분 외 (nite). 토끼를 이용한 심한눈손상/자극성 시험결과 가역적인 약간의 충혈과 결막부종 이 발생함(OECD Guideline 405)(ECHA)
- [Xylene]: 보통자극성, 강자극성 [Standard Draize test]: rabbit, 눈 자극성 물질임 (NIER)
- [Toluene] : 토끼를 대상으로 눈 손상성/자극성 시험 결과 약간 자극성임. 분류되지 않음 (ECHA)
- [Benzene]: 토끼를 대상으로 눈 손상성/자극성 시험 결과 자극성 있음 (ECHA)
- 호흡기 과민성
 - [가솔린(GASOLINE)] : 자료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 : 자료없음
 - [Xylene] : 자료없음 - [Toluene] : 자료없음 - [Benzene] : 자료없음
- 피부 과민성
 - [가솔린(GASOLINE)]: Buehler Test 결과 기니아피그는 과민성을 나타내지 않음.
 - [t-Butyl methyl ether]: 기니피그에서 과민성 음성(ECHA)
 - [Xylene]: 마우스를 대상으로 피부 과민성 시험 결과 분류되지 않음 (OECD TG 429) (ECHA)
 - [Toluene]: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피부 과민성 시험 결과 비과민성임 (EU Method B.6, GLP) (ECHA)
 - [Benzene]: 마우스와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피부 과민성 시험 결과 과민성 없음 (OECD TG 406) (ECHA)

○ 발암성

- *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
 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 - [Xylene]: Group 3 - [Toluene]: 해당없음
 - [Benzene] :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고시에 따라 발암성 구분1A로 분류됨

* IARC

- [가솔린(GASOLINE)]: Group 2B - [t-Butyl methyl ether]: Group 3
- [Xylene]: Group 3- [Toluene]: Group 3

- [Benzene]: Group 1

* OSHA

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: 해당없음 - [Toluene]: 해당없음 - [Benzene]: 해당없음

* ACGIH

- [가솔린(GASOLINE)]: A3 - [t-Butyl methyl ether]: A3

- [Xylene]: A4 - [Toluene]: A4 - [Benzene]: A1

* NTP

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: 해당없음 - [Toluene]: 해당없음 - [Benzene]: K

* EU CLP

- [가솔린(GASOLINE)]: Carc. 1B (Note P)

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: 해당없음 - [Toluene]: 해당없음 - [Benzene]: Carc. 1A

○ 생식세포 변이원성

- [가솔린(GASOLINE)]: EU CLP: 1B, 실험관내 미생물 유전자 변이원성 실험, 자매염색체 교환실험 결과 음성을 나타내고, 생체내 변이원성 실험결과 음성을 나타냄.
- [t-Butyl methyl ether] :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 시험결과 대사활서계 유무와 상관없이 음성 (OECD Guideline 480)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와 상관없이 음성(OECD Guideline 471) 시험관 내 포유류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결과 대사활성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음성(OECD Guideline 473) 시험관 내 포유류를 이용한 유전자 돌연변이 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와 상관없이 음성(OECD Guideline 476, GLP) 생체 내 포유류 간세포를 이용한 부정기 DNA 합성 시험결과 음성(OECD Guideline 486, GLP) 생체 내 Drosophila SLRL test 시험결과 음성(OECD Guidline 461, GLP) (ECHA)
- [Xylene]: In vitro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 (OECD TG 471), In vivo 마우스를 대상으로 설치류 우성 치사 시험 결과 음성 (OECD TG 478) (ECHA)
- [Toluene]: In vitro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돌연변이시험 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 (OECD TG 476), In vivo 랫드를 대상으로 골수 세포유전학적 분석 결과 음성 (ECHA)
- [Benzene] : In vitro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 (OECD TG 471), In vivo 마우스를 대상으로 포유류 적혈구 소핵 검사 결과 양성 (OECD TG 474) (ECHA)

○ 생식독성

- [가솔린(GASOLINE)]: 생식독성, 발달독성이나 기형발생이 나타나지 않음.
- [t-Butyl methyl ether]: 랫드와 마우스를 이용한 최기형성/모계독성/발달독성 시험결과 생식독성이 발생하지 않음(NITE)
- [Xylene]: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, NOAEC(모체독성, inhalation)=500ppm, NOAEC(발달독성, inhalation)=100ppm, NOAEC(최기형성, inhalation)=2,000ppm(rat) (NIER)
- [Toluene]: 랫드를 대상으로 생식독성 시험 결과 정자수 및 부고환 감소로 구분2로 분류됨, NOAEC 600 ppm (ECHA)
- [Benzene] : 랫드를 대상으로 1세대 생식독성 연구 결과 독성 영향, 체중, 생식기능과 관련된 영향이 관찰되지 않음. 시험물질과 관련된 새끼 생존, 부검, 유의한 이상 영향이 관찰되지 않음. NOAEC 960 mg/m3 (OECD TG 415) (ECHA)
- 특정 표적장기 독성 (1회 노출)

- [가솔린(GASOLINE)] : 자료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 : 자료없음

- [Xylene]: 현기증, 호흡기계 자극 (NIER),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(ECHA)
- [Toluene]: 사람에서 중추신경계에 작용, 피로감, 졸음, 현기증, 호흡기계에 자극, 흥분, 구토, 중추신경계 억제, 정신착란, 보행 이상 등을 일으킴. 눈, 코, 목에 자극을 일으킴. 실험동물에서 마취작용을 일으킴 (HSDB),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(표적장기: 마취영향) (EU Harmonised Category 3) (ECHA)
- [Benzene] : 폐와 간에 출혈(Congestion) 흡입독성 결과 지라의 T림프구의 수가 감소되었고 골수의 B림프구의 수 역시 감소됨. 사람에서는 피부, 비, 구, 인두에의 자극, 기관염, 후두염, 기관지염, 폐로의 대량 출혈 (표적장기 : 호흡기, 중추신경계, 조혈계) (NICNAS2001, OECD, NIOSH)
- 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
 - [가솔린(GASOLINE)]: 자료없음
 - [t-Butyl methyl ether] : 랫드를 이용한 반복경구독성 시험결과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의 혈중농도 증가, 신장,간의 무게 증가 등이 발생함, 흰쥐 및 마우스에서 기준값 범위에서 중대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(NITE)
 - [Xylene]: 중추신경계에 영향 (NIER)
 - [Toluene]: 중추신경계, 간, 청각, 신장 및 폐 등에 영향을 줌 (NIER)
 - [Benzene]: 마우스를 대상으로 반복흡입투여 시험 결과 14일 후 총 헤모글로빈, 적혈구 수, 혈소판 수 등이 유의하게 감소함.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(조혈계)에 손상을 일으킴 (OECD TG 413, GLP) (ECHA)
- 흡인 유해성
 - [가솔린(GASOLINE)]: 삼키면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
 - [t-Butyl methyl ether]: 자료없음
 - [Xylene]: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(ECHA)
 - [Toluene]: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(NIER)
 - [Benzene]: 액체를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(NLM)
- 고용노동부고시
 - * 발암성
 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
 - [t-Butyl methyl ether]: 발암성 2
 - [Xylene]: 해당없음
 - [Toluene]: 해당없음
 - [Benzene]: 발암성 1A
 - * 생식세포 변이원성
 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
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 - [Xylene]: 해당없음
 - [Toluene]: 해당없음
 - [Benzene]: 생식세포변이원성 1B
 - * 생식독성
 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
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 - [Xylene]: 해당없음
 - [Toluene] : 생식독성 2
 - [Benzene]: 해당없음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생태독성

- 어류
 - [가솔린(GASOLINE)]: LC50 82 mg/l 96 hr (IUCLID)
 - [t-Butyl methyl ether]: LC50 672 mg/ ℓ 96 hr Pimephales promelas (ECHA)
 - [Xylene]: LC50 7.6 mg/L 96 hr Oncorhynchus mykiss (OECD TG 203) (ECHA)
 - [Toluene]: LC50 5.5 mg/L 96 hr, NOEC 1.39 mg/L 40 d Oncorhynchus kistutch (ECHA)
 - [Benzene]: LC50 5.3 mg/L 96 hr Oncorhynchus mykiss, NOEC 0.8 mg/L 32 d Pimephales promelas (ECHA)
- 갑각류

- [가솔린(GASOLINE)]: EC50 170 mg/ℓ 24 hr (IUCLID)
- [t-Butyl methyl ether]: EC50 472 mg/ ℓ 96 hr Daphnia magna (ECHA)
- [Xylene]: NOEC 1.17 mg/L 7 d Ceriodaphnia dubia (ECHA)
- [Toluene]: EC50 3.78mg/L 48hr, NOEC 0.74 mg/L 7 d Ceriodaphnia dubia (ECHA)
- [Benzene]: EC50 10 mg/L 48 hr Daphnia magna (ECHA)

○ 조류

- [가솔린(GASOLINE)]: EC50 56 mg/l 72 hr Selenastrum capricornutum (IUCLID)
- [t-Butyl methyl ether]: ErC50 > 800 mg/l 72 hr Other(Desmodesmus subspicatus)(ECHA)
- [Xylene]: EC50 4.7 mg/L 72 hr Raphidocelis subcapitata (OECD TG 201) (ECHA)
- [Toluene]: EC50 134 mg/L 3 hr Chlorella vulgaris and Chlamydomonas angulosa (ECHA)
- [Benzene]: EC50 32 mg/L 72 hr Raphidocelis subcapitata (ECHA)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○ 잔류성

- [가솔린(GASOLINE)]: log Kow 2 (2-7) (ICSC) - [t-Butyl methyl ether]: Log Kow 0.94(HSDB)
- [Xylene]: log Pow 3.12 (ECHA)
- [Toluene]: log Pow 2.73 (20 °C) (ECHA) - [Benzene]: log Pow 2.13 (25 °C) (ECHA)

○ 분해성

- [가솔린(GASOLINE)]: 자료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자료없음
- [Xylene]: 자료없음 - [Toluene]: 자료없음 - [Benzene]: 자료없음

다. 생물 농축성

○ 생물 농축성

- [가솔린(GASOLINE)]: BCF 340 (Estimate) - [t-Butyl methyl ether]: BCF 1.5(EHCA)
- [Xylene]: 자료없음
- [Toluene]: BCF 90 (ECHA)
- [Benzene]: 자료없음

○ 생분해성

- [가솔린(GASOLINE)]: 자료없음
- [t-Butyl methyl ether]: 1.8 %, 28 day; Non-degradable (ECHA)
- [Xylene]: 94 % 28 d, Readily biodegradable (OECD TG 301 F, GLP) (ECHA)
- [Toluene]: 69 % 5 d, Readily biodegradable (ECHA)
- [Benzene]: Not readily biodegradable (NIER)

라. 토양 이동성

- [가솔린(GASOLINE)] : 자료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 : 자료없음
- [Xylene]: log Koc ca. 2.73 dimensionless (OECD TG 121) (ECHA)
- [Toluene]: 자료없음 - [Benzene]: 자료없음

마. 오존층 유해성

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- [Xylene]: 해당없음

- [Toluene]: 해당없음 - [Benzene]: 해당없음

바. 기타 유해 영향

- [가솔린(GASOLINE)]: NOEC: 10mg/L/72hr(Algae)

- [t-Butyl methyl ether]: fish:Pimephales promelas: NOEC, 31d, = 299 mg/L, other guideline: ASTM E1241-92, GLP crustaceans:Americamysis bahia: NOEC, 28d, = 26 mg/L, EPA OPPTS 850.1350, GLP algae:Desmodesmus subspicatus: NOEC, 72h, = 470 mg/L, other guideline: Directive 88/302/EEC(ECHA)

- [Xylene] : 자료없음 - [Toluene] : 자료없음 - [Benzene] : 자료없음

13. 폐기 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

- 소각 처리할 것.
-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.
-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,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할 것.

나. 폐기시 주의사항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.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.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- 가. 유엔번호(IMDG CODE/IATA DGR)
 - 1203
- 나. 유엔 적정 선적명
 - GASOHOL GASOLINE MIXED WITH ETHYL ALCOHOL, WITH NOT MORE THAN 10% ALCOHOL
- 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
 - 3
- 라. 용기등급(IMDG CODE/IATA DGR)
 - [
- 마. 해양오염물질
 - 해당없음
- 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
 -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.
 -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.
 -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: F-E (Non-water-reactive flammable liquids)
 -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: S-E (Flammable liquids, floating on water)

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- 작업환경측정물질
 - [가솔린(GASOLINE)]: BTX 및 N-haxane을 포함할 수 있음.
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Xylene) (MG-3 5% 이상 함유 시)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Toluene) (MG-3 10% 이상 함유 시)
 - 해당없음 (1% 이상 함유한 Benzene)
- 노출기준설정물질
 - [가솔린(GASOLINE)]: BTX 및 N-haxane을 포함할 수 있음.
 - 해당됨 (t-Butyl methyl ether)
 - 해당됨 (Xylene)
 - 해당됨 (Toluene)

- 해당됨 (Benzene)
- 관리대상유해물질
 - [가솔린(GASOLINE)]: BTX 및 N-haxane을 포함할 수 있음.
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Xylene) (MG-3 5% 이상 함유 시)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Toluene) (MG-3 10% 이상 함유 시)
 - 해당됨 (0.1% 이상 함유한 Benzene) (MG-3 10% 이상 함유 시)
- 특별관리대상물질
 - [가솔린(GASOLINE)]: BTX 및 N-haxane을 포함할 수 있음.
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 - [Xylene]: 해당없음 - [Toluene]: 해당없음
 - 해당됨 (0.1% 이상 함유한 Benzene) (MG-3 10% 이상 함유 시)
-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
 - [가솔린(GASOLINE)]: BTX 및 N-haxane을 포함할 수 있음.
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Xylene) (MG-3 5% 이상 함유 시)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Toluene) (MG-3 10% 이상 함유 시)
 - 해당없음 (1% 이상 함유한 Benzene)
- 제조등금지물질
 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
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 - [Xylene]: 해당없음
 - [Toluene]: 해당없음
 - [Benzene]: 해당없음
- 허가대상물질
 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
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 - [Xylene]: 해당없음
 - [Toluene]: 해당없음
 - [Benzene]: 해당없음
- PSM대상물질 제품: 해당됨 (인화성 액체, 제조 : 5,000 kg, 취급 : 5,000 kg, 저장 : 200,000 kg)
 - [가솔린(GASOLINE)] : 해당됨 (인화성 액체, 제조 : 5000 kg, 취급 : 5000 kg, 저장 : 200000 kg) (BTX 및 n-hexane을 포함할 수 있음)
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됨 (인화성 액체, 제조: 5000 kg, 취급: 5000 kg, 저장: 200000 kg)
 - [Xylene]: 해당됨 (인화성 액체, 제조: 5000 kg, 취급: 5000 kg, 저장: 200000 kg)
 - [Toluene]: 해당됨 (인화성 액체, 제조: 5000 kg, 취급: 5000 kg, 저장: 200000 kg)
 - [Benzene]: 해당됨 (인화성 액체, 제조: 5000 kg, 취급: 5000 kg, 저장: 200000 kg)
- 허용기준설정물질
 - [가솔린(GASOLINE)]: BTX 및 N-haxane을 포함할 수 있음.
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 - [Xylene]: 해당없음
 - 해당됨 (Toluene)
 - 해당됨 (Benzene)

나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
- 등록유예기간이 없는 화학물질
 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

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: 251 - [Toluene]: 131 - [Benzene]: 19

○ 중점관리물질

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: STOT - [Toluene]: 해당없음 - [Benzene]: CMR.STOT

○ CMR(발암성, 생식세포변이원성, 생식독성) 및 CMR 우려 물질

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 : 해당없음 - [Toluene] : 해당없음 - [Benzene] : 해당없음

다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유독물질
 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
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 - 해당없음 (85% 이상 함유한 Xylene)
 - 해당없음 (85% 이상 함유한 Toluene)
 - 해당없음 (85% 이상 함유한 Benzene)
-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
 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t-Butyl methyl ether)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Xylene)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Toluene)
 - 해당됨 (0.1% 이상 함유한 Benzene)
- 사고대비물질
 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
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 - [Xylene]: 해당없음
 - 해당없음 (85% 이상 함유한 Toluene)
 - 해당없음 (85% 이상 함유한 Benzene)
- 제한물질

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: 해당없음 - [Toluene]: 해당없음 - [Benzene]: 해당없음

○ 허가물질

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: 해당없음 - [Toluene]: 해당없음 - [Benzene]: 해당없음

○ 금지물질

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: 해당없음 - [Toluene]: 해당없음 - [Benzene]: 해당없음

라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위험물에 해당됨: 제4류 제1석유류(비수용성액체) (지정수량: 200리터)

마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[별표1]에 의해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됨.

바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-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
 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 : 해당없음 - [Toluene] : 해당없음 - [Benzene] : 해당없음

- EU 분류 정보
 - * 확정분류 결과

- [가솔린(GASOLINE)]: H304,H340,H350 - [t-Butyl methyl ether]: H225,H315

- [Xylene]: H226,H312,H315,H332

- [Toluene]: H225,H304,H315,H336,H361,H373

- [Benzene]: H225,H304,H315,H319,H340,H350,H372

- 미국 관리 정보
 - * OSHA 규정 (29CFR1910.119)

- [가솔린(GASOLINE)] : 해당없음

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: 해당없음 - [Toluene]: 해당없음 - [Benzene]: 해당없음

- *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
 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

- [t-Butyl methyl ether]: 453.599 kg 1000 lb

- [Xylene]: 45.3599 kg 100 lb - [Toluene]: 453.599 kg 1000 lb - [Benzene]: 4.53599 kg 10 lb

*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

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: 해당없음 - [Toluene]: 해당없음 - [Benzene]: 해당없음

*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

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: 해당없음

- [Toluene] : 해당없음 - [Benzene] : 해당없음

*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

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됨

- [Xylene]: 해당됨 - [Toluene]: 해당됨 - [Benzene]: 해당됨

○ 로테르담 협약 물질

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: 해당없음 - [Toluene]: 해당없음 - [Benzene]: 해당없음

○ 스톡홀름 협약 물질

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 : 해당없음 - [Toluene] : 해당없음 - [Benzene] : 해당없음

○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

- [가솔린(GASOLINE)]: 해당없음 - [t-Butyl methyl ether]: 해당없음

- [Xylene]: 해당없음 - [Toluene]: 해당없음 - [Benzene]: 해당없음

16.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9호(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.
- 본 MSDS는 KOSHA, NITE, ECHA, NLM, SIDS, IPCS,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.

나. 최초 작성일자

- 2016-04-12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
- 11 회, 2024-02-29

라. 기타

-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, 환경, 안전을 보호하고자,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.